

국제결제제도로서 BPO의 제도적 관점과 그 운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stitutional Perspective and Application for a Bank Payment Obligation as a International Payment Solution

채진익* Jin-Ik Chae

목 차

I. 서론	IV. BPO의 주요 제도적 운용과 그 시사점
II. BPO의 제도적 의의와 그 특징	V. 결 론
III. BPO의 전통적 방식과 제도적 비교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본 연구는 현재시행되고 있는 BPO의 디지털 프로세스와 그 지급에 있어서 제도적 관점에서 기존 제도와 비교분석하였다. BPO는 기능 면에 있어서 신용장과 유사하지만, 전자적 환경을 기반으로 한 은행 간의 지급약정이기 때문에 그 운용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제도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즉 BPO 거래에서의 책임과 의무, 지급 매카니즘, 거래당사자의 역할, 신용장의 확인과 양도 등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BPO는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며 비용 효과적이다. 본 연구는 BPO의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이미 발표된 BPO 관련 연구와 자료 등을 중심으로 문헌 연구하였다.

<주제어> BPO, URBPO, 전자제시, 전자매칭, BPO 지급결제

* 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I. 서론

국제무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라 도입된 BPO(Bank Payment Obligation)를 보편적인 지급결제수단으로 시행되고 있다. BPO는 디지털 환경에서 전통적인 신용장의 제도적 목적을 달성하고 그 기능을 구현함으로써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정보화 기반의 무역 금융결제솔루션으로 생각된다. 즉 BPO는 전통적인 신용장의 기본 기능인 지급약과 무역금융을 제공하면서, 그 지급 여부는 전통적인 방식과는 달리 디지털·자동화된 매칭시스템을 통하여 결정된다.

전통적인 무역금융결제시스템의 디지털·자동화를 통하여 획기적인 제도적 개선을 목표로 하는 BPO는 그 제도적 정착과 확산에는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과 그 기대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추진기관과 정책 당국의 소극적인 자세도 한 원인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제무역거래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BPO에 대한 인식 제고와 더불어 지속적인 제도적 보완개선을 통하여 그 제도적 확산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당사자와 추진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미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지만 BPO의 이론·제도적 기반을 정착발 전시키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보완함으로써 관련 당사자의 이해증진에 기여하고, 또한 학문의 이론적 기반과 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따라서 BPO의 이론적 기반을 중심으로 분석한 선행 연구를¹⁾ 기반으로 하여 보완 차원에서 연구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BPO의 제도적 관점에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그 현장 운용 매커니즘을 실제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학문적 이론 기반을 보강하였다. 본 제도의 도입에 많은 장애가 존재하지만 전 세계가 새로운 모습의 지식정보화사회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화를 기반으로 하는 BPO의 도입은 시대적 요구라고 본다. 본 연구는 국내외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은행, SWIFT 및 ICC 등의 자료에 근거하여 문헌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1) 본 연구와 연관되는 선행 최근 연구로는 송경숙·채훈(TSU/BPO거래의 특성과 신용장거래와의 차이점에 대한 고찰(2016)), 우광명(TSU-BPO의 활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2016)), 임재욱(SWIFT의 Trade Service Utility & Bank Payment Obligation에 관한 연구(2014)), 이봉수(SWIFTNet TSU BPO의 계보학적 연구(2016)), 채진익(TMA의 운용과 주요 BPO 비즈니스 시나리오에 관한 연구(2015)), 한낙현·김영곤(무역결제 수단인 TSU/BPO 제도의 도입에 따른 시사점에 관한 연구(2013)) 등이 있다.

II. BPO의 제도적 의의와 그 특징

1. BPO의 제도적 도입 배경과 그 기본 개념

1) BPO의 제도적 도입 배경

국제무역결제제도에서 BPO는 기존의 볼레로시스템(bolero system), 아이덴트러스트(IdeTrust) 및 트레이드카드(TradeCard; 현재 GT Nexus로 통합) 등의 전자무역시스템에 이어 또 다른 최선의 디지털 혁신으로 도입되었다.

국제무역에서 무역금융결제시스템은 신용장과 같은 전통적인 무역금융수단에서 오픈 어카운트 무역으로 변화되고 있었다. 오픈 어카운트 무역은 저렴한 은행 수수료를 포함하여 그 거래상의 유용한 많은 혜택을 제공하지만, 수출자의 입장에서는 위험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또한 당사자의 신용도를 기반으로 무역금융이 지원되기 때문에 물품대금의 회수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경쟁력 유지를 위해 확장된 지급조건을 제공해야 하는 수출자의 입장에게는 그 무역위험이 높아졌다. 따라서 시대적으로 금융결제에 대한 의사결정은 종이 가 아닌 데이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디지털 무역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였다(Legwaila, 2016).

본질적으로 BPO의 그 이면의 목적은 오픈 어카운트로 거래하는 것보다는 그 위험도가 낮으면서 전통적인 신용장방식 보다는 디지털·자동화된 즉, 이와 같은 상이한 두 제도의 각각의 장점을 융합한 무역금융결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오픈 어카운트거래와 비교하여, BPO의 주요 장점 중의 하나는 은행의 지급보장이다(Legwaila, 2016).

따라서 BPO는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국제상업회의소)와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전세계은행간금융통신협회)가 지원하는 프레임워크(framework)이며, 전통적인 신용장과 오픈 어카운트 방식의 절충안으로 도입되었다(tradefinanceglobal.com, 2018).

2) BPO의 제도적 의의와 기본 개념

BPO는 어느 한 은행이 또 다른 은행 앞으로 제시되는 무역거래(선적) 데이터가 전자적으로 일치되면 약정기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은행의 취소불능의 지급약정이다(ICC Pub. No. 876E, 2015). 즉, BPO는 은행이 특정 거래가 이행되면 그 약정일자에 또 다른 은행에게 대금지급을 약정하는 단지 지급확약이다(icc.tobb.org.tr, 2018). 그런데 BPO의 지급

약정은 은행을 상대로 하는 은행 간의 약정이며, 그 대금은 수취은행 앞으로 지급된다. 따라서 BPO의 수익자는 매도자가 아닌 매도자의 거래은행인 수취은행이다(ICC BPO E·G, 2012).

BPO는 디지털 멀티은행(multi-bank) 환경에서 전통적인 신용장제도의 편익(benefits)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운전자본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비용 효과적인 제도이다(Legwaila, 2016). 즉, BPO는 전통적인 무역금융 프로세스에서 수작업으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동시에 자동화된 환경에서 신용장의 모든 편익을 제공한다(icc.tobg.org.tr, 2018).

BPO는 대안적 무역결제방법으로 지급보장, 위험완화 및 금융을 위한 담보로 이용될 수 있다(IFC, 2016). 또한 BPO는 미결제 송장으로 지급결제가 진행되며, 전자적인 방식으로 무역거래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Legwaila, 2016).

BPO는 디지털화된 무역거래 데이터의 대조를 위해서 전자 데이터가 플랫폼을 통해서 교환된다. 즉, 전자매칭을 위해 전자거래 데이터가 플랫폼을 통하여 교환된다는 점에서 더 신속하고 단순화된 프로세스로 개선되었다(Legwaila, 2016).

국제무역에서는 URBPO(Uniform Rules for Bank Payment Obligation; BPO 통일규칙)와 전자매칭시스템으로 지원되는 새로운 금융결제방법인 BPO로 전체의 무역거래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하는 것이다. 그 기반은 SWIFT가 글로벌적으로 지원하는 은행의 안전한 금융 메시징 플랫폼을 이용한다(SWIFT, 2016). 따라서 BPO는 안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거래당사자의 무역거래에 따른 금융을 제공하며(SWIFT and OPUS, 2016; 채진익, 2017), 은행을 통하여 공급자와 매수자 간의 위험을 완화하는 한 형식으로 제공되는 것이 없는 전자무역 솔루션이다(tradefinanceglobal.com, 2018).

2. BPO의 주요 제도적 특징과 그 유용성

무역거래의 디지털·자동화는 물리적, 금융적 및 서류체인의 통합(convergence)이 가능하여 무역금융제도에 현실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이와 같은 컨버전스로 은행과 기업은 무역금융결제의 비용과 그 복잡성을 축소시키고, 수취은행에 대한 지급보장, 프로세스의 자동화를 통한 효율성 향상, 운전자본관리의 개선, 매수자와 공급자 간의 관계 강화, 그리고 글로벌 메시징 표준기반의 통합 기술 등을 향상시킨다. 특히 무역금융결제의 단순화와 비용의 축소는 중소기업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며, 결과적으로는 글로벌 무역을 촉진할 것이다(SWIFT and OPUS, 2016).

1) 지급보장(Hennah, 2013)

BPO로 매수자는 매도자가 약정된 지급조건에 따라 적기에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지급보장을 매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미 언급되었듯이 본 지급보장은 수취은행(매수자의 거래은행)이 제출한 데이터가 약정조건에 매치(일치)하는 조건으로 만기일(due date)에 지급하기로 하는 채무은행의 법적인 의무이다.

이는 현금관리의 관점에서 내외적으로 현금흐름의 확실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에게 유용하다. 이와 같은 절대적인 수준의 지급보장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역량은 매수자와 매도자의 관계를 강화시킨다.

BPO에서 매수자는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약정된 기준에 따라 기일이전에 당해 물품이 선적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선지급보다 안전하다. 그리고 전자 데이터의 신속한 프로세싱으로 매수자 또한 필요한 금융을 포함하여 은행 서비스에 더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은 기존의 전통적인 신용장제도를 이용하는 것과 유사하나, 그 공급체인에서 선택된 유발점(trigger points)을 통하여 더 광범위한 금융 기회를 제공한다.

2) 운전자본관리와 현금전환주기의 최적화

우선, 운전자본관리와 현금전환주기의 최적화를 통한 기업의 유동성 개선과 지급청구 및 송장대사 프로세스의 합리화를 통한 비용 감축은 오늘날 무역기업을 위한 핵심 요건이다. 이와 같은 조치에는 구매조건의 최적화를 통한 재고 감축과 개선·표준화된 지급조건의 협상을 포함한다. 관련 주문, 생산 및 인도 프로세스의 상황에 맞추어진 유연한 외부 금융의 이용은 최적의 유동성 유지에 기여한다(Hennah, 2013).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효율성 향상 및 재고관리의 간소화와 효율화에 맞추어진 그 절차적 이행은 합의된 지급조건의 범위 내에서 BPO의 개설로 보완될 수 있다. 따라서 적기에 지급이 이행되는 지급보장은 물론 유용한 다양한 형태의 금융이 제공된다(Hennah, 2013).

3) 프로세싱의 변화와 그 효율성 향상

BPO는 무역결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수단이다. 따라서 BPO의 도입은 매매, 법률, 회계, 신용관리, 위험관리 및 영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종이기반의 프로세스로부터 전자 프로세싱으로의 근본적인 변화이다(ICC BPO EG, 2012).

데이터의 전자적 매칭으로 프로세스의 성능(quality)을 향상시키고 하자(불일치) 및 분쟁의 위험이 축소되어 점검/인증 프로세스를 개선시킨다. 전자적 프로세싱은 데이터 일치성에 관련된 프로세싱의 비용을 상당히 축소시킬 것이다(Hennah, 2013).

BPO는 전통적 또는 전자적인 형태로 서류에 의존하기 보다는 완전히 자동화된 데이터 프로세싱이 가능하도록 하는 ISO 20022 메시징 표준으로 지원된다. BPO가 이용되는 경우에는 관련 지급조건은 URBPO가 적용되며, 이 경우에 그 적용은 자동화된 데이터의 매칭-대조 시스템으로 보장된다(ICC BPO EG, 2012).

BPO는 그 기반인 IT(information technology: 정보기술) 인프라에서는 물론이고 기존 프로세스에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은행은 BPO의 절차를 지원하는 그들의 무역포털을 업데이트(update)할 필요가 있으며, 신용장과 보증서를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와 유사한 통지관리(reporting)와 추적관리 서비스(tracking service)를 제공할 것이다(ICC BPO EG, 2012).

그리고 백오피스 애플리케이션(back office application)은 TMA 인터페이스(interface)와 연결하여 ISO 20022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확장성 생성 언어)²⁾ 표준을 지원한다. 거래고객의 무역 플랫폼과 은행의 인프라 간에 데이터 전송의 자동화가 필요할 것이다. 그 자동화로 서류심사 및 그와 관련된 수작업 처리과정을 제거시킴으로써 운용비용의 절감에 기여한다(ICC BPO EG, 2012).

4) 불일치(불매치) 위험의 축소

수작업의 서류 심사 및 그 일치성 판단은 본질적으로 주관적이다. 따라서 그 결과는 항상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그 결과로 분쟁과 지연을 야기하고 초과 할증료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하자 위험이 존재한다. 실증적 자료에 의하면 서류의 첫 제시에서 70%를 넘는 하자가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ennah, 2013).

이러한 상황에서 매수자와 매도자는 BPO를 채택함으로써 그 하자 위험이 축소될 것이다. 수작업 서류심사 프로세스를 전자 데이터의 매칭으로 대체함으로써 매수자와 매도자는 정확성과 객관성의 향상으로 인한 수혜를 입을 것이다(Hennah, 2013).

2)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은 W3C에서 개발된, 다른 특수한 목적을 갖는 마크업 언어를 만드는 데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다목적 마크업 언어이다. XML은 다른 많은 종류의 데이터를 기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XML은 주로 다른 종류의 시스템, 특히 인터넷에 연결된 시스템 간에 데이터를 용이하게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하여 HTML의 한계를 극복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https://ko.wikipedia.org/wiki/XML>).

3. BPO의 지급약정과 당사자의 의무와 책임

1) 채무은행의 수취은행에 대한 지급약정과 의무

채무은행은 수취은행에 지급의무가 있다. BPO로부터 발생하는 유일한 의무는 BPO 수취은행에 대한 채무은행의 의무이다. BPO는 취소불능이며 독립적인 채무은행(항상 매수자의 거래은행은 아니지만 통상적)의 지급약정이다. BPO는 TMA, 즉 중앙 데이터 매칭 및 워크플로우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개설된다. 일단 BPO가 개설되면, BPO는 준거법에 의하여 법적으로 유효하고 구속·강제력 있는 채무은행의 수취은행에 대한 지급약정을 구성한다(ICC, Pub. 750E; 채진익, 2013b).

URBPO 제10조 c항에서는 채무은행은 설정된 베이스라인(baseline)의³⁾ 지급약정 영역에 명시된 지급조건에 따라 수취은행에게 약정금액을 지급하거나 또는 연지급 약정을 부담하고 만기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 설정된 베이스라인에 명시된 BPO의 유효기일 이전에 설정된 베이스라인에서 요구한 모든 데이터 세트(data set)를 제출하여, 그 데이터가 매치되거나 또는 그 불일치(mismatch)가 수리된 경우(매치되지 않는 경우)에 한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하고 있다.

BPO 거래에서 채무은행은 매수자와 수취은행을 수익자로 하는 BPO 약정을 체결하며, 그 매칭조건이 일치되는 것을 조건으로 만기일에 BPO 지급, 위험분석 및 내부 통제관리(매수자의 KYC)⁴⁾, 그리고 필요한 경우 매수자에게 선택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SWIFT, 2016).

그러나 수취은행인 매도자 거래은행의 매도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직접적으로 BPO의 거래범위를 벗어나며, 이는 매도자의 거래은행과 그의 거래고객인 매도자와의 별도의 약정으로 다루어진다(ICC BPO EG, 2012).

따라서 BPO 거래에서는 채무은행이 적기에 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수취은행은 매도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다. URBPO에 따르면 채무은행은 수취은행의 지급의무에만 관계한다. 그러나 수취은행과 매도자 간의 별도의 약정으로 해결될 수 있다. 이 경우, 수취은행은 BPO 범위를 벗어나는 그 위험 또는 지급의무를 인수한다는 취지로 별도의 약정을 할 수도 있다(ICC BPO E.G, 2012; ICC, 2013).

3) “베이스라인”은 매수자의 거래은행 또는 매도자의 거래은행이 TMA에 제출한 기초 무역거래에 관한 데이터를 의미한다(URBPO 제3조). 즉, BPO의 거래조건으로 보면 된다.

4) 고객파악제도(Know-Your-Customer Rule)는 금융기관과 금융시스템을 보호하는 한편 금융제도(상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자신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 거래당사자 간의 의무와 책임

BPO 거래에서 거래당사자인 매도자와 매수자는 물품의 품목, 수량, 단가 등의 물품 명세를 협상하고, 지급약정 금액, 결제방법 및 수수료, 송장의 수취, 연지급, 그리고 유효기간, 선적조건 및 최종 선적일 등의 계약 내용에 대해 약정한다(SWIFT, 2016).

BPO 거래에서 수취은행은 위험분석 및 내부 통제관리(매도자의 KYC), 매도자의 데이터 세트(data set)의 제출 확인, 매도자와 BPO 기반 서비스 약정, 매도자에게 BPO 통지 및 확인, 또한 약정에 따라 매도자에게 선택적인 금융 서비스 제공 등의 역할을 한다(SWIFT, 2016). 그리고 TMA에 선적정보를 제시하는 은행이며, 베이스라인이 설정되면 BPO의 수익자가 된다. 한편 제시은행은 설정된 베이스라인에 따라서 데이터를 제시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역할이다(ICC, 2013).

그런데 매도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매수자가 그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무 은행 또는 수취은행의 의무에 관한 문제이다. 당연히 채무은행은 수취은행에 지급의무가 있다(ICC BPO E.G, 2012). 채무은행의 수취은행에 대한 지급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당해 수취은행이 채무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매도자가 대금을 회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매도자의 대금회수는 궁극적으로 당해 수취은행과 매도자 간의 별도의 약정에 달려있다(ICC, 2013).

또한 채무은행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매도자의 거래은행은 매도자에 대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매도자가 수취은행으로부터 지급확약을 받은 경우에는 수취은행은 채무은행이 파산하는 경우 매도자에게 지급해야 될 것이다(ICC, 2013).

한편 매수자의 거래은행과 수취은행 간에 베이스라인이 성공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아직 지급이 이행되지 아니한 상황(연지급 BPO인 경우)에서 당해 매수자의 거래은행(채무은행)이 파산된 경우에는 수취은행이 채무은행의 위험을 인수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URBPPO 범위를 벗어난 지급약정이다(ICC BPO EG, 2012).

따라서 BPO 거래는 매도자의 거래은행인 수취은행과 매도자 간에 체결되는 별도의 약정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그 별도의 약정은 BPO 개설 시에 두 당사자의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거래고객이 은행에 BPO의 개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고객은 BPO가 설정된 베이스라인에 편입되는 때부터 또는 조건변경으로 설정된 베이스라인에 편입되는 때부터 당해 은행에 그에 상응하는 상환의무를 부담한다(IFC, 2016).

4. 준거 규정

BPO는 SWIFT의 TSU(Trade Service Utility; 무역서비스 유틸리티)와 그 규약집(rule book)을 근거로 운용되고 있다. 그리고 국제상업회의소는 URBPO를 제정하여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ICC Pub. No. 750E). 특히, 그 기술적 시스템은 TMA의 모든 제공업자 또는 서비스 사업자를 통하여 독립적으로 이용된다(Quinn, 2016).

BPO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은행은 공통의 TMA에⁵⁾ 가입해야 하며, 그 가입으로 그 TMA에 규정된 조건을 승인한다. 베이스라인의 설정은 특정 거래에 대한 은행 간의 약정을 의미하며, 은행 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상호 약정할 필요는 없다. 규약집에 규정되어 있는 TMA 약정은 모든 참여 당사자 간의 다자간 계약이다.

그리고 UCP 또는 기타 ICC 공표물과 마찬가지로 URBPO를 채택한 은행들은 본 URBPO가 적용된다(ICC, 2013). 따라서 신용장이 전자기록의 제시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UCP의 보칙인 eUCP가 적용되듯이 BPO를 채택한 경우에는 URBPO가 적용된다(ICC BPO EG, 2012). URBPO는 단지 은행 간의 거래영역에 적용될 뿐이며, 기업과 은행 간 또는 기업과 기업 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Legwaila, 2016).

본 규칙 제15조에서는 “BPO의 준거법은 설정된 베이스라인에 약정된 채무은행의 지점 또는 사무소가 소재한 장소의 준거법으로 한다. URBPO는 준거법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그 준거법을 보완한다. 그리고 채무은행이 준거법 또는 규제사항(regulatory requirements)에 의하여 그 약정준수에 제한을 받는다면, 채무은행은 BPO에 따른 약정을 준수할 필요가 없으며, 그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의무 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채진익, 2013b).

5) 거래매칭 애플리케이션” 또는 “TMA”는 참여은행의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중앙처리 데이터 매칭(대조) 및 워크플로우 애플리케이션을 의미한다. TMA는 참여은행으로부터 접수한 TSMT(무역서비스관리) 메시지를 처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그 메시지에서 있는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대조한 다음에 관련 모든 TSMT 메시지를 각 참여은행에 전송한다(URBPO 제3조).

Ⅲ. BPO의 전통적 방식과 제도적 비교

1. 지급약정과 기본 규칙

1) 기본 개념과 지급약정

전통적인 신용장은 신용장의 조건에 일치되는 선적서류의 제시를 조건으로 개설은행이 수익자 앞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개설은행의 지급확약이다. 반면 BPO는 그 선적 정보가 성공적으로 매치(일치)되었거나 또는 그 미스매치(불일치)가 수리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불일치한 경우) 채무은행이 수취은행(매도자의 거래은행) 앞으로 약정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채무은행의 취소불능의 지급확약이다(ICC, 2013).

따라서 신용장과 같은 전통적인 무역금융결제제도에 있어서 취소불능의 지급확약은 은행과 기업고객 간의 지급확약이다. 반면 BPO는 채무은행과 매도자의 거래은행인 수취은행 간의 취소불능의 지급확약이다(blogs.oracle.com., 2018).

즉, 신용장의 경우에는 그 개설은행이 신용장에 일치한 서류의 제시를 전제로 수익자 앞으로 그 대금지급을 약정하는 것이다. 반면 BPO는 BPO 채무은행이 설정된 베이스라인과의 일치하는 선적(운송) 데이터의 제시를 전제로 수취은행 앞으로 그 대금지급을 약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BPO는 BPO 거래에 참여하는 은행들 간의 거래영역이며, 은행과 당해 기업 거래고객 간의 상호작용은 경쟁적인 비즈니스 영역이다. 따라서 URBPO는 은행들 간의 적용에만 제한된 것이며, 이는 BPO의 수익자는 수취은행만이 되는 이유이다(ICC, 2013).

2) UCP와 URBPO

ICC는 UCP는 1933년 처음 공표되어 현재 제6차 개정되었으며, UCP는 신용장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시되는 서류에 적용되는 eUCP에 의해 보완된다(Hennah, 2013).

UCP는 화환무역과 은행시스템을 통한 물리적인 서류의 발송과 관련되는 반면, URBPO는 “은행 지원 오픈 어카운트 무역”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물리적인 서류는 계속 존재할 것이지만 그 서류는 매도자가 직접 매수자에게 발송한다. 그리고 물리적인 서류를 심사하는 대신에 은행은 공유 기반의 TMA에서 작성된 데이터 매치 보고서에 의존할 것이다(Hennah, 2013).

URBPO는 비교적 단문이고 단순한 규칙이다. URBPO는 수작업으로 처리되는 상당한

양의 종이서류에 비교하면, 자동화된 환경에서 전자 데이터의 프로세싱에 적용되는 규칙으로 비교적 간결하고 단순하다(Hennah, 2013).

그리고 중요한 것은 URBPO는 독립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인 반면, eUCP는 UCP의 보완규칙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eUCP는 신용장거래에 적용된다. 그 적용에서 당해 서류들은 선택적으로 서류의 스캐닝(scanning)과 이미징(imaging)화 가능성을 포함하여 그 자체로 전자화된다(Hennah, 2013).

한편 URBPO에 따라 제시되는 데이터는 물리적인 서류를 대체할 목적은 아니지만, 약정된 산업계 표준(ISO 20022 TSMT)에 따라 전자매칭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구조화하기 위해 그들 서류로부터 단순한 데이터 요소의 추출이 허용된다(Hennah, 2013).

3) 제도적 기능 및 거래상의 위험

BPO는 거래기업을 그 거래당사자로 하지 않고 은행만을 거래당사자로 운용되는 제도이며, 수취은행의 위험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매도자를 수익자로 하는 수취은행에 의한 모든 위험완화는 BPO와는 분리되어 있다. BPO를 이용하여 오픈 어카운트 및 공급체인 금융솔루션이 운용되는 상황 속에서 은행(채무은행 또는 수취은행)은 위험완화를 제공할 수 있다(ICC, 2013).

따라서 BPO와 신용장 모두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즉 a) 위험완화 수단, b) 매도자에 대한 지급보장, c) 금융수혜를 위한 담보의 한 형태로 기능을 한다. BPO가 오픈 어카운트 거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BPO는 수출전 금융 또는 공급체인금융을 포함하여 더 다양한 범위의 금융 선택(옵션)을 지원한다(ICC, 2013).

그러나 채무은행은 신용장에서 이용되는 BPO 프로세스의 범위를 벗어나는 서류를 담보로 이용할 수 없다(ICC, 2013).

2. 거래 데이터의 제시 및 그 일치성

BPO는 TMA를 이용하여 제시되는 전자 데이터가 매치되거나 또는 그 불일치(미스매치)가 수리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을 약정하는 조건부이다. 이는 그 프로세싱의 최적화는 물론 운용위험(operational risks)을 용이하게 감소시킨다.

무역거래에 따르는 금융지원과 그 대금지급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전통적인 무역 금융결제의 프로세싱과 매칭·대조는 종이에 기반하는 수작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시간 소모적이고 고비용 구조이다. 반면 BPO는 글로벌 표준 ISO 20022 메시지를 이용하는

자동화된 프로세싱(전자 프로세싱 및 매칭·대조)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신용장의 경우는 일치하는 서류의 물리적인 제시를 근거로 한 대금지급과 물품의 교환을 보장하는 반면, BPO는 일치하는 무역거래(선적) 데이터의 전자적 제시를 근거로 대금지급과 물품의 교환을 보장한다(blogs.oracle.com).

BPO 거래에서는 물리적 서류는 매도자가 직접 매수자에게 발송한다. 반면 신용장은 은행시스템을 통한 물리적인 서류의 제시를 필요로 한다. BPO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물리적 서류는 은행채널을 통하여 송부될 필요는 없다(ICC, 2013).

즉 전통적인 신용장거래에서는 통상적으로 은행을 통하여 서류가 발송되어 매수자에게 전달되지만, BPO 거래에서는 무역서류로부터 정보가 추출되어 은행을 통하여 TMA에 입력되어 그 제시 데이터가 베이스라인과 비교·대조됨으로써 그 매치(일치)성 여부로 그 대금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통관에 필요한 선적서류는 매도자가 직접 매수자에게 발송하여 당해 매수자가 약정물품을 통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어느 은행이든 신용장과 마찬가지로 물리적인 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나, 그 프로세스는 BPO와 URBPO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상황은 있을 수 있다. 즉 수취은행이 데이터 입력 서비스를 제공하며, 또 국내 법제도적으로 당사자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은행의 내부 규정으로도 이를 담보의 한 형태로 이용하거나 또는 필요한 규제조치(sanction controls)를 취하기 위해 요구할 수 있다(ICC, 2013).

3. 운송서류의 취급과 그 유효성

1) BPO에서 운송서류의 취급

전통적인 종이 선하증권은 전 세계는 디지털화되어 가고 있지만, 근래까지도 전자선하증권으로 대체 시도가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Legwaila, 2016). 전자선하증권은 무역서류의 전자화에 따라 그 역할과 기능은 축소되는 것으로 보인다(tradefinanceglobal.com; 채진익, 2017).

그러나 전자선하증권은 이론적으로는 종이 시스템의 많은 결함을 해결하고 많은 이점을 제공한다. 우선 전자선하증권은 전 세계에 동시적으로 발송되어질 수 있고, 행정적 거래부담을 대폭 축소시키며, 종이의 이동 없이도 더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으로 모든 변경 또는 수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전자지급결제시스템과 보안시스템의 개선으로 그 시스템의 안전성이 향상되었다. 보상장과의 상환으로 화물을 인도하는 상황이 이와 같은

시스템의 이점으로 개선된다면 행정적 거래비용을 더욱 절감시킬 것이다(Legwaila, 2016).

BPO 거래에서 선하증권과 같은 운송서류는 운송서류의 세트에 포함된 필드(field)에 그 데이터 정보가 제공될 것이다. 운송서류 세트상의 데이터는 그 베이스라인과 다른 데이터 세트(data set)의 정보와 대응되어 매치된다. 이 경우, 운송 데이터 세트상의 운송(라우팅)정보는 베이스라인상의 그에 대응되는 운송(라우팅) 정보와 매치된다. 그 물리적인 서류는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은행채널을 통하지 아니하고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직접 송부된다(ICC, 2013).

2) 운송서류의 진정성과 유효성

URBPO에 따르면 참여은행은 데이터의 정확성에 대해 어떠한 의무나 또는 책임은 없다. 그러나 금융기관은 TMA에 제출하는 거래 데이터는 당해 금융기관이 접수한 데이터와 정보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ICC, 2013).⁶⁾ 신용장의 경우에는 당해 서류의 “진정성”을 확인할 의무가 없다. 은행은 그 서류가 “문면상” 일치하다는 것만을 확인한다. BPO에 따르면 은행의 책임은 은행들이 그 데이터에 의존하는 것과 거의 유사하다(ICC, 2013).

URBPO 제7조에서는 “참여은행은 데이터를 취급하는 것이며 그 서류, 또는 데이터 또는 서류가 관련될 수 있는 물품, 서비스 또는 이행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데이터는 대부분의 경우에 존재하게 되는 물리적인 서류에 기초하거나 또는 그들 서류로부터 추출될 수 있다. 그러나 참여은행은 자신이 입력 또는 수취하는 데이터와 관련될 수 있는 그들 서류, 물품, 서비스 또는 이행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본 규칙은 이에 관한 일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ICC, 2013; 채진익, 2013b).

그리고 BPO는 그 자체로는 사기를 예방하지는 못한다. 물론 은행은 거래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의 거래고객들에 대해 표준적인 고객파악(KYC)과 실사(duediligence checks)를 이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데이터를 제출하는 은행은 TMA에 제출하는 그 데이터의 유효성을 입증할 필요는 없으나, 그들의 거래고객으로부터 접수한 그 데이터가 제출된 데이터와 동일하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ICC, 2013).

6) 참여은행은 TMA에 제출한 모든 데이터는 기초 무역거래와 관련한 물품, 서비스 또는 이행의 매수자 또는 매도자로부터 접수한 데이터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URBPO 제9조 c항).

4. BPO의 확인과 양도

1) BPO의 확인

신용장거래에서 수익자는 개설은행의 신용이 불확실하거나 또는 은행으로부터 확실한 대금회수를 보장받기 위해 통지은행을 포함한 신용이 확실한 제3의 은행의 확인을 추가한 확인신용장을 요구할 수 있다(채진익, 2017).

BPO도 신용장과 마찬가지로 그 “확인”이 가능한가의 문제이다. BPO는 은행들 간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신용장과 동일한 방법으로는 “확인”될 수 없다(ICC, 2013). 그러나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결제조건은 은행과 그들의 거래고객 간의 약정으로 해결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별도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수취은행은 사실상 매도자에게 BPO 지급을 “확인”하는 은행이 된다(ICC, 2013).

따라서 매도자는 채무은행의 지급거절 또는 지급중단이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수취은행으로부터 지급확약을 받을 수 있다(ICC Guidelines, Appendix; 채진익, 2017). 이 경우, BPO 수취은행은 채무은행의 지급거절에 대한 위험을 부담한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지급조건은 수취은행과 그의 거래고객 간의 합의로 약정된다. 이와 같이 별도로 약정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모든 경우에 있어서 수취은행은 매도자에게 “비수권으로 확인”하는 은행이 된다(ICC BPO E·G, 2012; 채진익, 2017).

BPO 지급약정에서 매도자 또는 매수자 모두 적극적인 역할을 맡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에 대해 “비수권”(silent)으로 남는다(Hennah, 2013).

2) BPO의 양도

BPO는 은행을 상대로 거래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양도될 수 없다. 예컨대 BPO는 수입 유통업자로부터 제조업자로 양도될 수 없다. 그러나 각 은행의 개별적인 가치제안(value proposition)의 일환으로, 당해 은행들은 그 거래에서 약정되지 아니한 제3자 앞으로 그 대금을 양도하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따라서 대금양도는 가능하나, 진정한 양도의 개념은 아니다(ICC, 2013).

따라서 BPO 거래에서 양도 가능성은 선택 조건이 아니다. 다만, 매도자는 물품을 실질적으로 인도할 책임있는 제3의 당사자를 대금 양수자로 하여 그 지급을 이행하도록 수취은행에게 별도로 지시할 수는 있다(ICC BPO E·G, 2012; 채진익, 2017).

5. BPO와 회환추심 및 보증

1) BPO와 회환추심

회환추심은 수출자에게는 오픈 어카운트와 비교하면 더 안전한 방법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신용장제도와 비교해서는 그 안전성이 낮다. BPO는 지급약정이 제공되기 때문에 회환추심보다는 더 안전할 것이다. 본 지급약정은 물리적인 서류가 아닌 은행시스템을 통한 데이터의 제시를 근거로 한다(ICC, 2013).

2) BPO와 보증

BPO에 따른 지급보장은 보증 또는 보증신용장(stand-by credit)과 유사한가의 문제이다. BPO는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기초 무역거래와는 독립되어 있는 1차적인 지급확약이다. 일단 개설되면 BPO는 제시된 거래 데이터의 사전 매치를 조건으로 한 취소불능의 지급확약이라는 점에서 즉, 지급확약부의 BPO는 그 성격상 신용장과 유사하며, 매수자의 채무불이행의 발생으로 그 보증약정이 이행되는 이차적인 약정인 보증 또는 보증신용장과는 다르다(ICC, 2013).

따라서 BPO는 은행보증 또는 보증신용장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BPO는 자체결제 기능이 있는(self-liquidating characteristics), 즉 즉시 현금화될 수 되는 지급결제방법이며, 무역 사이클의 일부이다. 물품의 선적 또는 서비스의 제공으로 이행된다. BPO는 우발채무로 회계처리하며, 초기에는 자금이 지원되지 않는다(ICC, 2013).

IV. BPO의 주요 제도적 운용과 그 시사점

1. BPO의 전자 데이터의 운용과 그 지급

1) 전자 데이터의 제시와 그 형식

BPO 거래에서 기업과 은행 간 채널(channel)은 URBPO가 적용되지 않는다. 은행과 그의 거래고객 간의 관계는 공개적인 경쟁공간이다. 그 공간에서 어떠한 채널, 포맷(format), 솔루션(solution)은 정보를 전달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ICC, 2013).

BPO 거래에서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ISO 20022 TSMT 메시징 표준과 URBPO는 은행 간의 영역에만 적용되며, 거래고객과 은행 간에는 표준이나 정해진 채널 또는 기술적인 솔루션은 없다. 따라서 기업과 은행 간에는 종이, 팩스, 메일(mail) 또는 XML 메시지 포맷으로 전달될 수 있다(ICC, 2013).

TMA 거래에서 거래 데이터 요소는 구매 주문서, 상업송장, 운송 및 보험, 그리고 증명서를 의미한다(ICC BPO EG, 2012). 따라서 선적정보로부터 추출된 이들 데이터는 자동화된 매칭대조를 위해 은행시스템을 통해 입력된다. 즉, 거래당사자 간의 무역거래에 따르는 종이서류가 계속 존재하더라도 은행에서는 당해 종이서류로부터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여 추출된 그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변환·제시한다(채진익, 2017)

여기에서 전통적인 신용장거래에서 UCP 600은 신용장거래의 모든 당사자를 구속하기 때문에 선적후 수익자는 UCP 600 및 신용장의 조건에 따라 요구서류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익자는 그 제시서류가 신용장의 조건에 불일치하는 경우, 보완 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보완할 수 있으며, 또한 단순한 보완 문제는 즉시 현장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비록 수작업으로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전통적·관습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일이라 큰 불편으로 생각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과도기지만 BPO는 현 시점에서는 통일적으로 완전한 전자시스템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편이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 문제가 BPO의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즉, 전적으로 또는 일부 전자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무역거래에 따른 선적 데이터를 추출하여 디지털화함으로써 프로세스가 진행된다. 그런데 이는 단순히 대금결제를 위한 시스템적인 절차이고, 통관을 위한 서류는 별도로 발송된다는 점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완전한 전자시스템화를 구현하기까지는 수입국가에서 물품통관 시에 필수서류로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 중의 하나인 선하증권이 없이 매수자 거래은행의 인도지시 등으로 이루어지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전 세계의 모든 국가의 물품통관 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전자 데이터의 매치 여부의 결정

오픈 어카운트에서는 매수자가 매칭기준(matching criteria)을 규정한다. 그 매칭은 요구된 모든 서류제시와 단순한 확인(simple checking) 또는 통지된 구매 주문서에 지정된 대로 자동화, 반자동화, 또는 수작업 방식(manual fashion)으로 서류상 또는 서류 간 구체적인 데이터 값(specific data values)과 상세한 점검으로 구성되어 있다(BAFT-IFSA;

Hennah, 2013).

전통적인 무역거래에서의 서류심사(document checking)가 BPO에서는 데이터의 매칭으로 대체된다. BPO 관련 거래에서 베이스라인에 명시된 관련 데이터 요소는 그에 상응하는 상업송장 및 운송서류로부터 추출되어 데이터 세트의 형태로 TMA에 입력된다. 매도자는 그 데이터(또는 서류)를 그의 거래은행인 수취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출은 TMA의 운용범위 밖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URBPO의 범위를 벗어난다(Hennah, 2013).

여기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은 매도자가 선적 데이터를 그의 거래은행인 수취은행에 제시하는 과정은 URBPO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그 데이터의 제시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그 오류에 대한 참여은행의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문제는 URBPO에 따른 책임을 면하지만 또 다른 문제로 생각된다.

매도자의 거래은행은 상업송장 및 운송 데이터 세트를 생성하기 위해 본 데이터를 이용할 것이다. 이들 데이터 세트는 TMA에 입력되어 설정된 베이스라인과 대조된다(Hennah, 2013). 즉 BPO는 전통적인 신용장의 경우와 같이 물리적인 서류만으로 은행에 제시되지 않고, 무역거래 데이터가 매수자와 매도자에 의해 그들의 거래은행에 전자적으로 제시(물리적으로 제시되는 경우에는 디지털화)되어 표준 포맷 ISO 20022 TSMT(무역서비스 관리)를 이용하여 TMA라 칭해지는 특별한 목적의 플랫폼상에서 자동적으로 매치·대조된다(ICC BPO EG, 2012).

그리고 당해 무역거래 데이터가 매치되는지의 여부는 URBPO의 규정에 따라 그리고 TMA에 적용되는 기능(functionality)과 규칙에 따라 전적으로 결정되며(IFC, 2016), 그 결과는 데이터 세트 매치 보고서(Data Set Match Report)로 작성되어 통지된다(Hennah, 2013).

따라서 BPO에서는 신용장과는 달리 제시서류의 일치성에 대해 ‘제시 데이터의 매치’ 여부로 표현하고 있고 또 그 매치성의 여부를 TMA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 불일치 또는 매치에 대한 사소한 문제는 현격하게 축소될 것으로 본다. 예컨대 선적기일 또는 유효기일의 경과와 같은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그 매치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사소한 문제로 야기되는 분쟁으로 발생하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비용이 축소된다는 측면에서 전자시스템화의 큰 효과로 본다.⁸⁾

7) “데이터 세트 매치보고서”는 TMA가 설정된 베이스라인에서 요구한 모든 데이터 세트의 제시를 설정된 베이스라인과 자동적으로 대조한 결과 그 데이터의 매치 여부, 즉 데이터의 매치 또는 데이터의 미스매치 중 어느 하나를 통지하는 내용으로 각 참여은행에게 발송한 TSMT 메시지를 의미한다(URBPO Art. 4).

8) TMA 매칭규칙은 그 매치에 대해 “엄격히”(strictly) 또는 “대략적으로”(loosely) 매치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3) BPO의 지급

제시된 데이터 세트가 매치되지 않는 경우 TMA는 모든 불일치 부분을 하이라이트(highlight) 표시하여 데이터 세트 매치 보고서를 발송함으로써 모든 참여은행에 통지한다. 매수자의 거래은행은 TMA에 불일치(mismatch) 승인 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그 데이터 불일치를 승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URBP0 제10조 g항에서는 “채무은행은 데이터를 대조한 결과 당해 데이터가 매치되지 않고, 그 미스매치(불일치)가 매수자의 거래은행 또는 그 매수자의 거래은행 이외의 다른 채무은행에 의해 거절되는 경우에는 지급하거나 또는 만기에 지급하기로 하는 연지급 약정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조에서는 데이터가 매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백하게 강조하고 있다(ICC 751E, p. 95; 채진익, 2013b).

매수자는 지급만기(통상적으로 서류 만기일)에 지급하는데, 매도자는 그 대금을 지급받거나 또는 당해 매도자의 금융이 상환되고(금융이 있는 경우), 그 잔액은 매도자에게 지급된다(BAFT-IFSA). 매도자의 거래은행(수취은행)이 매도자에게 금융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BPO 지급자금은 당해 금융의 상환자금으로 이용된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그 수취은행은 매도자에게 전액 지급한다(Hennah, 2013).

BPO 거래에서 지급결제 프로세스는 전반적으로 신용장거래와 유사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신용장거래에서는 제시서류상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개설은행은 서류 제시일 다음날로부터 제5은행영업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담당자는 이 점에 유의하여 제시서류를 심사하여 개설의뢰인과 매입은행에 통지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과 서류의 불일치에 대한 권리포기를 교섭하여 그 권리포기를 승낙 받은 경우에는 그 취지를 서류발송은행(매입은행)에 통지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물론 개설은행은 물론 불일치 교섭과 별도로 그 불일치에 대해 신용장통일규칙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반면 BPO 거래에서는 TMA에서 시스템적으로 매치 여부를 통지하고 있으며, 매수자의 거래은행은 불일치(mismatch)에 대한 승인 메시지를 TMA에 발송함으로써 그 데이터 불일치를 승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신용장거래와 같이 매수자 거래은행의 매수자와의

다. 여기에서 “엄격한 매칭”(matching strictly)은 정확히 매치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즉 자구별(character by character)로 대조되며 완전히 일치(identical)될 때만이 매치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대부분 데이터 요소는 엄격히 매치될 것이다. 한편 “대략 매칭”(matching loosely)은 대소문자(upper and lower cases), 스페이스(spaces) 및 구두점은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알파벳과 숫자를 제외한 모든 문자는 구두점(punctuation)으로 간주된다(Hennah, p. 65; 채진익, 2015).

불일치에 대한 교섭과 그 권리포기에 대한 규정은 없다. 매수자의 거래은행은 매수자와 그 불일치에 대한 권리포기의 교섭은 URBPPO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선 BPO 거래에서 매수자의 거래은행은 신용장거래에서의 개설은행보다 재량권의 폭이 넓기 때문에 위험과 부담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즉 TMA의 미스매치 통보에 상황에 따라 승인통보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물론 매수자의 거래은행과 매수자간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약정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그 별도의 약정에 따라야 할 것이다.

2. BPO의 현실과 제도적 전망

무역거래에서 종이 프로세스 기반인 화환신용장은 적어도 수백 년에 걸쳐 위험완화 수단으로 제공되어 왔으며, 금융 지원과 적기의 지급이 보장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 속에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역거래의 자동화 및 디지털화는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실정이다. 그러나 무역거래의 디지털화는 물리적, 금융적 및 서류체인의 통합(convergence)이 가능하여 무역금융제도에 현실적으로 기여할 것이다(SWIFT and OPUS, 2016).

BPO는 신용장과 유사한 제도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안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기능 면에서 신용장의 개설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ICC BPO E·G, 2016). 여기에 편리성 추가한 BPO는 ICC와 SWIFT에 의해 지원되는 전통적인 신용장제도와 오픈 어카운트 무역제도 간의 절충체도로 보인다(tradefinanceglobal.com, 2018).

따라서 BPO는 다양한 무역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이 지원되는 데이터 기반의 매카니즘이다. BPO는 자동화된 데이터의 매칭과 그 기준으로 종이 흐름을 제거하고 인간의 개입(주관적인 판단)을 대체하기 때문에 순수한 오픈 어카운트보다 더 안전한 보안을 제공하며, 이는 또한 신용장제도 보다는 더 큰 효율성을 제공할 것이다(SWIFT, 2016).

그러나 BPO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서는 BPO 거래에 현장 은행의 역할은 필수적이며, 은행의 중요한 과제는 BPO 거래에 관련된 당사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거래당사자가 BPO를 적극적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그 수혜 및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그런데 은행의 입장에서는 BPO를 도입하는데 있어서는 기술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우려로 BPO의 도입에 소극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단지 실제로 필요한 것은 매수자 또는 매도자의 무역 데이터를 송부하는데 필요한 SWIFT의 TMA와 같은 매칭엔진(matching engine)을 필요로 하는 것뿐이라는 점이다(Legwaila, 2016).

그리고 BPO의 확산에 장애가 되는 것은 일부 은행의 경우 다른 은행들이 먼저

도입하여 그 결과 성공적인 운용을 확인한 후에 도입하겠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며, 이 또한 BPO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아직도 은행은 적극적인 도입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며, 기업은 여전히 학습하고 있는 실정이다(Legwaila, 2016).

이와 같은 BPO의 제도적 발전에 대한 장애는 그 제도적 이해 부족에서 오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BPO 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가야할 것이다.

그렇지만 BPO는 시대적 방향이기 때문에 국제거래에서 주된 결제수단으로 이용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BPO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디지털 기반 글로벌 '공급체인금융'의 새로운 솔루션으로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비즈니스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또한 앞으로 계속 진화될 것이다.

V. 결론

국제무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도입된 BPO는 정보기술의 디지털화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결제방식이다. URBPO와 전자매칭시스템으로 지원되는 BPO로 전체의 무역거래 프로세스를 전자시스템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BPO는 제도적으로 전반적인 기능 면에 신용장제도와 유사한 면이 있지만 지급보장을 기본 매카니즘으로 하여 디지털화 및 자동화함으로써 전통적인 신용장방식에 비해 효율성 및 비용 측면에서 제도적 이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BPO는 도입 초기에 기대했던 만큼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모든 거래당사자로 확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현재의 환경에서는 예상과 달리 그 도입으로 인한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즉, 전자시스템화의 불완전성으로 기존의 서류 작업이 축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비용 또한 그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은행 시스템이 이용자 지향의 완전한 디지털화가 구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그 프로세스의 효율성과 획기적인 비용절감, 그리고 지속적인 제도적 개선정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자제시에 따른 제도적 문제점을 해소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은행의 BPO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무역금융시스템의 디지털화로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프로세스상의 제도적 보완으로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 이용의 편리성을 제

고해야 할 것이다. 그 제도적 개선의 일환으로 초기에는 SWIFT에서 신용장거래와 마찬가지로 서류작성을 포함한 모든 거래에 대해 디지털 형식으로 정형화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스템의 통합디지털화와 효율적인 업무 프로그램의 구축으로 BPO의 이용에 대한 현실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은행은 그 운용으로 인한 생산성 및 수익성을 향상시키는 반면 기업은 무역금융의 비용과 거래의 복잡성의 축소, 절차의 자동화, 운전자본관리의 개선 및 운영비용을 축소 등의 혜택이 제공될 것이다.

이러한 무역금융 프로세스의 단순화와 비용 축소는 중소기업의 접근 가능성을 증가시키며, 결과적으로 글로벌 무역촉진에 기여할 것이다. 기존의 전통적인 무역결제수단을 효과적으로 개선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전자적 대안으로 발전할 것이다.

BPO거래가 활성화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BPO 거래시스템에 대한 현실적인 분석이 곤란하다는 점, 그리고 모든 무역거래 당사자들의 기존 제도에 대한 관성적 집착성으로 새 제도에 대한 소극성은 연구의 완성에 한계점이다.

참고문헌

- 송경숙·채훈(2016), “TSU/BPO거래의 특성과 신용장거래와의 차이점에 대한 고찰”, 「국제상학」, 제31권 제2호, pp. 99~117.
- 우광명(2016), “TSU·BPO의 활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무역연구」, 제12권 제6호, pp. 283-299.
- 임재욱(2014), “SWIFT의 Trade Service Utility & Bank Payment Obligation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9권 제4호, pp. 177-196.
- 이봉수(2016), “SWIFTNet TSU BPO의 계보학적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8권 제3호, pp. 3-21.
- 채진익(2014), 「전자무역론」, 청목출판사, 2014, p. 262.
- 채진익(2013a), “ICC/SWIFT의 협력적 공급체인금융 솔루션의 운용현황과 그 전망”, 「무역연구」, 제9권 제4호, p.171, 172.
- 채진익(2013b), “URBPO 750E의 제정과 운용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60권, p. 123.
- 채진익(2015), “TMA의 운용과 주요 BPO 비즈니스 시나리오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 구], 제65권, pp. 117-139, p. 125.
- 채진익(2016), “BPO의 제도적 운용과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41권 제5호, p. 180, 151, 152.
- 채진익(2017), “BPO 고객약정을 위한 ICC 가이드라인의 운용과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42권 제2호, p. 360.
- 한낙현·김영곤(2013), “무역결제수단인 TSU/BPO 제도의 도입에 따른 시사점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60권, pp. 141-175.
- Byrne, James(2012), “The Four Stages in the Electrification of Letters of Credit”, *3 George Mason J. Int. Commer. Law* 253, pp. 274-279.
- BAFT, EBA, FCI, ICC and ITFA(2016), “Standard Definitions for Techniques of Supply Chain Finance”, *Global SCF Finance Forum*, p. 17, 64, 67.
- BCG(2017), “Digital Commercial Supply Chains and Trade”, *Discussion paper*, p. 3. 12.
- Casterman, A.(2010), “Collaborative supply chain finance”, *Dialogue Q4*, SWIFT, p, 18.
- Casterman, A.(2015), “A New Era in Commerce and Finance”; From E-Invoicing to E-Supply Chain Management, The Papers, *Innopay*, p. 24.
- Chaturvedi, Vishal(2013), “Bank Payment Obligation: The New Global Standard for International Trade from SWIFT & ICC”, *The Financial Services Blog*, available at blogs.oracle.com/financialservices/entry/bank_payment_obligation_the_new(Jan. 31, 2017).
- Dolan, John F.(2013), “Negotiable Obligations for Discount: Notes, Acceptances, DPU's and BPO's”, *29 Bank. Finance Law Rev.* 103.
- Garg, H.(2017), “Innovation in Trade Finance”, *Global Public Investor*, p. 82.
- Hennah, D.(2010), "Bringing the Bank Payment Obligation to Market", *DCInsight*, Vol 16 No 3, July - September, p. 10.
- Harada, T.(2013), “A Perspective of Trade Finance by Bank of Tokyo- Mitsubishi UFJ”, Workshop on Trade Finance Lombok, Indonesia, *Bank of Tokyo-Mitsubishi UFJ*, p. 11.
- ICC(2012), *The Supplement to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for Electronic Presentation (eUCP)*.
- ICC(2013), *Uniform Rules for Bank Payment Obligations*, Version 1.0, Publication No.

- 750E, p. 8.
- ICC(2012), “The Bank Payment Obligation: Capital & Accounting Treatment”,
Document No. 470/1204, p. 4, 6, 11, 12,
- ICC BPO Education Group(2012), “Frequently Asked Questions – Banks”, *Document
No. 110912*, p. 3, 4, 5, 6.
- ICC(2013), *THE ICC GUIDE to the Uniform Rules for Bank Payment Obligation*,
Publication No. 751E, p. 87, 88.
- ICC(2013), Bank Payment Obligation(BPO), Frequently Asked Questions for Banks, p.
9.
- ICC(2015), *ICC Guidelines for the Creation of BPO Customer Agreements*,
Document No. 470-1251, p. 12.
- ICC(2015), ICC Global Survey 2015: Rethinking Trade and Finance, ICC Pub. No.
876E.
- ICC(2016), “Bank Payment Obligation”, *Business Briefing, ICC Banking Commission
Meeting Mexico City*, p. 19, 21.
- IFC(2016), “Bank Payment Obligation: Financial Instruments to Manage Risk in the
Open Account Trade”, *World Banking Group*, p. 12.
- Mugasha, A.(2003). “Issuer Insolvency”, *Law Lett. Credit Bank Guarant*, 94.
- Ozalp, A.(2015). “According to the New ISP; L/C and Practices”, *Istanbul: Turkmen
Publishing*.
- Popa, V.(2013), “The Financial Supply Chain Management: a New Solution for Supply
Chain Resilience, *Amfiteatru Economic*, Vol. XV. No. 33, p. 141.
- Raketti, Matthew V.(2016), “The Bank Payment Obligation: A Vehicle for the
Electrification of Commercial Letters of Credit?”, *2016 Annual Review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 Practice*, edited by James E. BYRNE, Christopher
S. BYRNES, Justin B. BERGER(2016).
- Susmus, T. and S. Ozgur Baslangic(2015), “The New Payment Term BPO and Its
Effects on Turkish International Business”, *Procedia, ScienceDirect*, p. 324.
- SWIFT & OPUS Advisory Service Int’l Inc.(2016), “Digital Trade and Trade Financing;
Embracing and Shaping the Transformation”, p. 5, 6.
- SWIFT(2016), “Bank Payment Obligation; A New Payment Method”, p. 4.
- Wells, R.(2014), “Bank Payment Obligations(BPOs) – Basics for Corporates”,

BarrettWells, T3P Limited, p. 1.

[https://www.swift.com/news-events/news/swift-standards-forums-land\(2017\)](https://www.swift.com/news-events/news/swift-standards-forums-land(2017)).

[http://www.bolero.net/solutions/finacial_supply_chain.html\(2011\)](http://www.bolero.net/solutions/finacial_supply_chain.html(2011)).

[https://blogs.oracle.com/financialservices/bank-payment-obligation\(2018\)](https://blogs.oracle.com/financialservices/bank-payment-obligation(2018)).

[https://www.tradefinanceglobal.com\(April 21, 2018\)](https://www.tradefinanceglobal.com(April 21, 2018)).

[https://www.tradefinanceglobal.com\(April 21, 2018\)](https://www.tradefinanceglobal.com(April 21, 2018)).

A Study on the Institutional Perspective and Application for a Bank Payment Obligation as a International Payment Solution

Jin-Ik Chae

Abstract

Bank payment obligations (BPO) have been used since 2013 as a payment solution in the business of supply chain finance. The BPO is an irrevocable undertaking of the obligor bank subject to the successful electronic matching of all required data sets with the established baseline in the TMA.

Although the BPO should be regarded as similar to a letter of credit, it is a new payment solution based on advanced technology and data-driven mechanisms. The BPO differs from the credit in institutional terms such as bank-to-bank obligations, automated matching engines, and transfer and confirmation, etc.

The BPO can also be used effectively as a stand-alone electronic solution to traditional instruments. It provides a new range of solutions to meet the ever-changing needs of trade customers.

However, Operation of the BPO can lead to several issues including an assurance of payment between recipient banks and sellers because the BPO is a bank-to-bank obligation. The URBPO does not apply to relationships between banks and their business clients.

So,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promote institutional understanding and present implications by reviewing major issues concerning the BPO as compared with the letter of credit from the institutional point of view. This research was based on documentary research focusing on the preceding research and the materials of ICC and SWIFT.

〈Key Words〉 BPO, Electronic Presentation, Electronic Matching, BPO Payments